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7. 11 선고 2018가단241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 고 A

변론 종결 2018. 6. 27

판결 선고 2018. 7. 11

주 문

1. 피고는

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5지분에 관하여 2000. 9. 14.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접수 제126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5지분에 관하여 2000. 9. 14.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접수 제126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D은 2000. 9.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접수 제1261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을 끼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D이 사망함에 따라 B에게 3/5, C에게 2/5의 각 비율로 상속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5지분에 관하여,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5지분에 관하여 각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B에 대하여 '6,247,055원 및 그 중 4,621,353원에 대하여 2014. 8.29.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채권을, C에 대하여 4,164,704원 및 그중 3,080,902원에 대하여 2014. 8. 29.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진 법인으로, B,C을 대위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판사 박광선

별지